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·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‘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’를 ‘시·도지사’로 약칭하여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제9호 가목, 제44조제2항, 제60조의2제1항 등)
- 국가 또는 시·도지사 등은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에 따른 자원 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3조제2항)

II. 검토의견

1. 유가보조금 지원(안 제43조제2항 등)

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유류세연동 보조금¹⁾과 유가연동 보조금²⁾으로 구성되고, 「지방세법」 제135조³⁾에 따라 “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”(이하 ‘자동차 주행세’)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, 자동차 주행세는 국토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하여 지자체별로 안분⁴⁾하며, 지자체별로 안분받은 예산을 집행함.

- 1) 2001년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기본 보조금
 $\{ \text{지급액(원/ℓ)} = \text{현재 유류세(교육세 포함)} - 2001.6.30. \text{ 기준 유류세}(183.21\text{원}) \}$
- 2) 유가 급등 시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보조금
 $\{ \text{지급단가} = \{ (\text{지역별 평균 판매가격} - \text{기준가격}(1,700\text{원})) / 2 \}$
- 3) 제135조(납세의무자)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“자동차세”라 한다)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,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(이하 이 절에서 “과세물품”이라 한다)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)에게 부과한다.
- 4) 제137조(신고납부 등)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(이하 이 절에서 “특별징수의무자”라 한다)로 한다.
 ② (생략)
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(그 이자를 포함한다)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·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33조(안분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1.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및 군(이하 이 절에서 “시·군”이라 한다)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.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,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.
2.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.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.

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·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.

1.

9,830억원	×	$\frac{\text{해당 시·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}}{\text{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}}$
12		
2.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(9,830억원/12)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·군별 유류세 보조금

개정안 제43조제2항제2호는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이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.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나, 「지방세법」상 유가보조금 세원이 지방세로 명시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(중앙정부)를 지원 주체로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음.

아울러,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주행세(유가보조금) 집행차액(보조금 교부 이후 남은 금액) 또한 6,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시급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<자동차 주행세(유가보조금) 현황>

단위 : 억원

연도	세입(A)	세출내역			집행차액 (A-B)	자동차 주행세율 (%)
		계(B)	자동차 보유세 인하 세수보전액	유류세 연동보조금 +유가 연동보조금		
2023년	28,118	21,400	9,830	11,570	6,718	26
2024년	29,613	22,750	9,830	12,920	6,863	26
2025년	34,286	27,569	9,830	17,739	6,717	26

출처 : 국토교통부

※ 울산시(정유사 소재 9개 시·군(울산, 순천, 포항, 인천 등)에서 징수한 후 울산시로 송금)가 세입을 총괄 수령하여, 매월 전국 시·군에 배분

참고로, 기획예산처는 개정안과 같이 유가보조금의 지원 주체에 중앙정부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유가보조금의 재원에 국비를 추가하는 세출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, 위 표와 같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가보조금 재원에 매년 집행차액이 발생하는 등 중앙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따라서,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원 주체에서 국토부장관을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.

[안 제50조제5항, 제51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]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43조(재정 지원) ① (생략)	제43조(재정 지원) ① (생략)	제43조(재정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44조,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)는 운송사업자,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(이하 이 조,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“운송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유류(油類)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	② 국토교통부장관(제2호만 해당한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생략)	1. ~ 2. (생략)

제44조의2(보조금의 지급
정지 등) ① 특별시장 ·
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
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
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면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5년의 범
위에서 제43조제2항 또
는 제3항에 따른 보조
금의 지급을 정지하여
야 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

제44조의2(보조금의 지급
정지 등) ① 국토교통
부장관(제43조제2항제
2호의 보조금만 해당
한다. 이하 제2항 및
제3항에서 같다), 시·
도지사, 시장 또는 군
수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
·도지사, 시장 또는
군수-----

제44조의2(보조금의 지급
정지 등) ① 시·도지
사, 시장 또는 군수---

② 시·도지사, 시장
또는 군수-----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통구매카드의 거래기 능을 영구적으로 정지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 <u>·특별자치시장·특별</u> <u>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</u> <u>군수</u>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 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 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 는 증거자료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, 필요 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 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 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	③ <u>국토교통부장관, 시</u> <u>·도지사, 시장 또는</u> <u>군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③ <u>시·도지사, 시장</u> <u>또는 군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2. 신고포상금 지급(안 제60조의2)

개정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⁵⁾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
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
5) 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·도지사나
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3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

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개정안은 제2조제9호에서 광역단체장 명칭을 ‘시·도지사’로 통합 정의함에 따라, 제60조의2제1항의 주체를 ‘시·도지사’로 변경하였음.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43조제2항의 지급 주체인 ‘시장 또는 군수’는 포함되지 못하고 누락되었음.

따라서,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.

[안 제60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]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<u>시·도지사</u> (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·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<u>시·도지사</u> <u>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6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① <u>시·도지사</u> (제3호의 경우에는 <u>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</u>)는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
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